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59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종합소득 기본공제 계산시 금융투자소득 제외(임광현·정태호의원안) ...	3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15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33인
- (2) 제 안 일 : 2024. 9. 23.
- (3) 회 부 일 : 2024. 9.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종합소득 기본공제 계산시 금융투자소득 제외 (임광현·정태호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제50조) ○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공제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수 × 연 150만원 - 해당 거주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다음의 부양가족 • 60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직계비속 •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위탁아동	☐ <u>금융투자소득 제외 규정 신설</u> ○ <u>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 제외</u>

* 임광현의원안 2024. 9. 23. 발의(의안번호 4159), 정태호의원안 2024. 10. 28. 발의(의안번호 4967)

☐ 2건의 개정안은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 기준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연간 100만원 이하) 합계액 계산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시키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거주자,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이때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 시 합산되지 아니하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데,¹⁾

2025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금액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 기본공제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²⁾

따라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의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됨.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는 5,000만원으로 이를 직접 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받은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2.5% 정도로 추정되었으나,³⁾ 1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자의 수는 그 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종합소득 인적공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1)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2022.

2) 현재 금융투자소득과 소득 성격이 유사한 해외주식 등 양도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등도 모두 포함되고 있음.

3)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103324호), 2020. 11.

□ 개정안은 종합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다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금융투자소득만 제외할 경우 다른 소득과의 형평에 반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7
